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0

발의연월일: 2024. 8. 22.

찬 성 자:조승래·장종태·이정문

천준호 • 한준호 • 이기헌

진선미 · 장철민 · 박정현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 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 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 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를 제5조제1항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현행과 같음) 가. ~ 하. (생 략) <신 설> 거.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 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 라. 경찰·소방공무원 또는 <u>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u>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

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
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
은 「공무원연금법」 제25
조를 준용한다.

5. (생략)

② ~ ⑦ (생 략)

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